#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3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박상혁·조 국·박해철

김병기 • 박희승 • 노종면

정진욱 · 김현정 · 김한규

조승래 • 민병덕 • 이연희

박홍근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 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,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,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 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, 제4조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####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국내유족"이란 사할린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배우 자 및 자녀를 말한다.

제4조 중 "동반가족에"를 "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"로 한다.

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중 "동반가족의"를 "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의"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동반가족에"를 "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동반가족으로서"를 "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으로서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유족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은 국내유족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 ~ 2. (생 략)	1 ~ 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3. "국내유족"이란 사할린에서		
	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		
	주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.		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사할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		
린동포와 그 <u>동반가족에</u> 대한	<u>동</u> 반가족 및 국		
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	<u>내유족에</u>		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			
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			
에 따른다.			
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	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		
지원에 관한 특별법	지원에 관한 특별법		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		
제4조의2(실태조사) 정부는 사할	제4조의2(실태조사)		
린동포과 그 <u>동반가족의</u> 생활	<u>동반가족 및 국</u>		
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	내유족의		
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			
한다.			
제5조(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	제5조(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		
정 지원) ① 정부는 사할린동	정 지원) ①		
포의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			

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<u>동반</u> <u>가족에</u>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조(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 정 지원 신청 등) ① 사할린동 포와 그 <u>동반가족으로서</u>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 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·③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<u>동반</u>
<u>가족 및 국내유족에</u>
제6조( <u>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</u>
<u>정</u> 지원 신청 등) ①
<u>동</u> 반가족 및 국내
<u>유족으로서</u>
,
②·③ (현행과 같음)